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374
-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29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6월 13일, 문종철·신승호 의원 외 30명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5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1.6.29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문종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“자전거 수리센터” 관련 사항 및 용어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『주차장법』 제19조 및 『주택법』 제21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및 주택건설시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개정함(안 제2조, 안 제11조 등)
-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개정함(안 제5조)
- 자전거주차장의 면적 산정기준을 확대함(안 제7조제2항)
-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서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삭제함(안 제7조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안석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(자전거 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 변경 등)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,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“자전거정비소”를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

부설주차장 및 주택 건설시 시장 등이 사업주체에 대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도록 한 사항을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전거주차장 설치예산 지원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,

이러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

-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을 “노외주차장 총면적”에서 “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”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바,

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사항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설치토록 함으로써 최근 자전거 이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자전거정비소”를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정비계획의 수립주기)”를 “(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계획(이하 ”정비계획“이라 한다)”를 “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”활성화계획“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노외주차장”을 “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”으로 하고,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자전거보관소·정비소 등의 설치)”를 “(자전거보관소·수리센터 등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자전거정비소”를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정비소·대여소 등의 통합운영)”을 “(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수리센터·대여소 등의 통합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정비소”를 “수리센터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자전거정비소”를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정비소”를 “수리센터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정비소”를 “수리센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정비소”를 “수리센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정의)</p> <p>1.-2. (생략)</p> <p>3. <u>"자전거정비소"</u>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4.-5. (생략)</p> <p>제5조(<u>정비계획</u>의 수립주기) 시장은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<u>정비계획</u>(이하 "<u>정비계획</u>"이라 한다)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<u>노외주차장</u>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.</p> <p>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다</p>	<p>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정의)</p> <p>1.-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"자전거 수리센터"</u>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4.-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<u>활성화계획</u>의 수립주기) 시장은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<u>활성화계획</u>(이하 "<u>활성화계획</u>"이라 한다)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<u>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</u>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.</p> <p>③ 삭제</p>

제11조(자전거보관소·정비소 등의 설치)

- ① (생략)
-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원, 하천, 공공청사, 대형유통·판매시설, 공동주택단지, 3,000㎡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, 자전거대여소, 자전거정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정비소·대여소 등의 통합운영)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(이하 "권역"이라 한다)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정비소·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

- ① (생략)
-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-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

제11조(자전거보관소·수리센터 등의 설치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원, 하천, 공공청사, 대형유통·판매시설, 공동주택단지, 3,000㎡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, 자전거대여소,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수리센터·대여소 등의 통합운영)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(이하 "권역"이라 한다)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수리센터·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-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

제14조(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

- ① (생략)
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·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- ③-④ (생략)

제15조(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)

- ① (생략)
-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관한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-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·보관소·정비소·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
- ② (생략)

제14조(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·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- ③-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관한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·보관소·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-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·보관소·수리센터·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
- ② (현행과 같음)